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7. 18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. 7. 12. 이동주 의원 외 11명
- 나. 회부일자 : 2017. 7. 13.
- 다. 상정일자 : 제21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17. 7. 18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이 필 레 의원

가. 제안이유

빈곤, 건강 등 사회·경제적 환경의 영향으로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주민들에게 중학교 졸업 수준의 문자해독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일상 생활에 필요한 능력함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성인문해교육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- 2) 성인문해교육의 지원대상 규정(안 제3조)
- 3)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규정(안 제4조)
- 4)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

수 있는 근거와 공공시설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○ 조례안은 2017년7월12일 이동주 의원의 대표발의 및 11명 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안되었고, 2017년 7월13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○ 조례안은 빈곤, 건강 등 사회·경제적 환경의 영향으로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주민들에게 문자해독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 생활에 필요한 능력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려는 것임.

○ 「평생교육법」 제39조 등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독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와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등을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우리구에서는 비문해 및 저학력 성인의 기초능력 향상을 위하여 2010년부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, 현재 마포평생학습관과 양원주부학교 등에서 예비중학, 계속교육 1.2, 문해 1-3단계, 중학과정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, 교재비 등을 지원해오고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